

의안번호	2213301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3. 25.
추계번호	25B5375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“차문화”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, 가공, 평가, 저장, 판매, 이용, <u>다도·다례</u>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·발전되어 온 유형·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함(제4호) ※ 차문화의 정의에 다례(茶禮)를 포함함	의무규정
2	안 제18조(홍보전시관 등 설치·운영의 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8조(홍보전시관 등 설치·운영의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차문화 교육을 위한 전시관·문화체험관 설치·운영(제18조제2항 신설)
 - 개정안은 차문화의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 - 현행법 제18조¹⁾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

1) 제18조(홍보전시관 등 설치·운영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

[표 3] 현재 운영중인 차문화체험관(3개소)

- (보성) 한국차박물관
 - (체험관) 다례교육, 차 만들기 체험, 차 음식만들기 체험, 블렌딩 티 만들기 체험 등
 - (박물관) 전시 및 관람시설
- (하동) 하동야생차문화센터
 - (체험관) 다례체험, 찻잎따기 체험, 덖음체험 등
 - (치유관) 티클래스(티소믈리에,에피소드 티), 차와 명상 등
 - (박물관) 전시 및 관람시설
- (부산) 부산차문화관
 - (장소) 부산 전포동 일원
 - (내용) 티클래스(티소믈리에,에피소드 티), 차와 명상 등
 - (박물관) 전시 및 관람시설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차문화의 정의에 다례가 포함되어 현행 차문화 관련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그 규모 및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입지나 규모,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추정하기는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